

서울 향동공공주택지구 교통신호기
설치 · 관리 협약서

2020. 1.

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
서울주택도시공사

서울 향동공공주택지구 교통신호기 설치·관리 협약서

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(이하 “소장”이라 한다)과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(이하 “사장”이라 한다)은 서울 향동공공주택지구 교통신호기 설치·관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.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“소장”과 “사장”이 서울 향동공공주택지구 교통신호기 설치·관리 관련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업무조정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업무범위)① “소장”은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승인업무
2. 교통신호기 인수인계 후의 유지 관리

② “사장”은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교통신호기 설치공사
2. 교통신호기 인수인계 전의 유지관리

③ 서울 향동공공주택지구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의 지구 내 교통신호기 설치·관리는 “사장”의 업무로 하며, 공사 완료 후의 설치·관리는 “소장”의 업무로 한다. 다만, 인수인계가 완료된 교통신호기의 관리는 “소장”의 업무로 한다.

제3조(준공) “사장”은 “소장”의 승인을 득 하여 교통신호기 공사를 준공할 수 있다. 다만, 준공에 따른 인수인계는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4조(하자보수 및 민원처리) 하자보수 및 민원처리는 제2조③항에 따른 관리업무자의 업무로 한다.

제5조(인수인계)① 인수인계는 “소장”과 “사장”이 상호 협의하여 작성한 “인수인계서”에 서명함으로써 완료된다.

② 도로의 관리자가 “소장”인 도로의 교통신호기는 준공 후 30일 이내 인수인계 한다.

③도로의 관리자가 지정되지 않은 도로의 교통신호기는 도로관리자가 지정되고 도로가 인수인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인수인계 한다.

④ “소장”은 다음의 각 호의 경우 교통신호기를 인수하지 않을 수 있다.

1. 교통신호기가 설치기준 등의 기준과 다르게 설치된 경우
2. 보도턱낮춤, 점자블럭, 노면표지 등이 설치기준 등과 다르게 설치된 경우

제6조(협약의 효력)①이 협약은 “소장”과 “사장”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.

②이 협약의 효력은 양자가 협의에 의하여 효력을 해지하기 전까지는 일방에 의하여 효력을 정지시킬 수 없다.

③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“소장”과 “사장”이 날인 하여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.

[부칙]

제1조(회의의 효력)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의로 정할 수 있고 “소장”과 “사장”의 관인이 날인된 공문으로 그 효력을 가진다.

2020년 1월 일

서울특별시
강서도로사업소장 박 문 희

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 세 용 (인)

